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8396호, 2021. 8. 17. 공포, 2021. 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문심리위원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10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기일(‘영상기일’)의 신청 및 동의, 영상기일의 실시,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등 영상기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4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에 영상기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 증인신문에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감정인신문과 차이가 없어진 점을 고려하여, 준용규정만 남기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신문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103조의2 삭제)

4.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7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① 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이하 “영상기일”이라 한다)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법 제287조의2제1항의 재판장등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법원(이하

“재판장등 또는 법원”이라 한다)은 영상기일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른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기일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영상기일의 신청 이후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2.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제3항의 결정이 없는 경우

⑤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한 쪽 당사자로부터 영상기일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영상기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그 영상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영상기일 실시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문서^V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신불량, 소음, 문서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판장 등 또는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73조의4(개정된 장소 및 심리의 공개) ①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p> <p>① ~ ⑤ (생 략)</p> <p>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p>	<p>제38조의10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p> <p>①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p> <p>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신 설>

제7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① 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이하 "영상기일"이라 한다)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법 제287조의2제1항의 재판장등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법원(이하 "재판장등 또는 법원"이라 한다)은 영상기일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른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기일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영상기일의 신청 이후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2.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제3항의 결정이 없는 경우

⑤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한 쪽 당사자로부터 영상기일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영상기일 동의 여부

<신 설>

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그 영상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영상기일 실시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제73조의3 (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애에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문서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신불량, 소음, 문서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

<신 설>

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 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73조의4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①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9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하는 경우 문서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제9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 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7조의2에 따라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취지와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곳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삭 제>

제103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등)

<삭 제>

① 법 제339조의3에 따른 감정인신문은 감정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 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감정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② 법 제340조 단서에 따른 감정증인신문과 법 제341조제3항에 따른 감정서 설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